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6. 10. .

제 출 자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 요 내 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금액 : 13,747천원
- 산출근거
 - 2025년 중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중 영종구에 해당하는 세입결산액으로 재산정
 -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137,467,679천원)×1.0/10,000=13,747천원
- 출연기간 : 매년
-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연구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0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
-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함

3. 참 고 사 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 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

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(안)

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

I 관련 법령

- 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【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】
- 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【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】
- 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【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】
- ☐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【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】

II 출 연 기 관

- ☐ 기 관 명 : 한국지방세연구원(2011. 4. 20. 설립)
 -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·운영하는 연구기관
- ☐ 근 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- ☐ 주요기능
 - 지방전환 시대 선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역량 강화 연구
 -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연구
 - 시가표준액 가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과표 업무 지원
 -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운영
 - 지방세정 협력사업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정 정보 지원
 -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지원 등 공동 대응 체계 구축

Ⅲ 출 연 금

□ 개 요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.0*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

※ 출연금 적용비율 :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제1항제1호
 . '20년이전 1만분의1.5 → '21년 1만분의1.3 → '22년 1만분의 1.2 → '26년 1만분의 1.0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

□ 출연기간 : 매년

□ 출연금액 : 13,747천원 ['26년도(17,241천원) 대비 △3,494천원]

□ 산출근거 : 전전년도(2025년도) 보통세 세입결산액×1.0/10,000

- 2025년 중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중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·세외수입 세부 승계 기준에 따라 영종구에 해당하는 결산액으로 재산정

(단위: 천원)

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[보통세 : 재산세, 등록면허세, 주민세(재산분,종업원분), 지방소비세]				2027년도 출연금 (A×1.0/10,000)
구 분	계(A=B+C)	현년도(B)	과년도(C)	
중 구	178,112,582	175,460,070	2,652,512	17,811
영 종 구	137,467,679	135,612,811	1,854,868	13,747
제물포구	40,644,903	39,847,259	797,644	4,064

- 최근 5년간 출연금(중구)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5년	2024년	2023년	2022년
출 연 금	17,241	18,974	20,566	18,435	16,339

IV

기 대 효 과

- ☐ 지방세입 제도 발전 연구·조사 등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 기여
- ☐ 지방세 교육 운영을 통하여 세무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
- ☐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 대응으로 세정역량 강화

상위 및 관계 법령

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□ 지방세기본법

-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<개정 2020. 12. 29.>
- ② ~ ⑥ (생략)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2. 29., 2023. 12. 29.>
-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, 2020. 9. 8., 2026. 2. 5.>

1. 1만분의 1.0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¹⁷

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에 따른 출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13,747천원으로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

4. 작성자

행정국 세무1과장 강성관